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3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새샘마을 8단지)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6.12.30. 이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4.20.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
- 세종특별자치시(이하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라 한다)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3에 따라 청약 조정대상지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동조 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6.04.20.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신행정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공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간 종사자 등'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공급하며, 신청접수 미달물량에 한해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나, 반드시 확정된 물량을 확인하시어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신설) 대상 부서의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신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함)
- ※ 본 아파트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으로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1순위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배분하여 차순위에 공급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에 따라 인터넷 청약에 따라 인터넷 청약은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해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과거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제1호의 해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해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해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해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제3조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 ※ 해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 청약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경기도 과천시·성남시 - 모든주택 / 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화성시(동탄2에 한함) - 공공택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 민간택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공공택지
 -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분양권 전매 및 해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이전기관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포함)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본 아파트의 85㎡이하 당첨자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동안, 85㎡초과 당첨자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향후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만 해당)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금지 및 해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 현재 청약 신청자나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세대 및 장애인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자녀의 세대보다 우선합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본 아파트는 최저층이 3층인 주택형이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101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주택법」 제65조 관련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중개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6.12.3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 1175호(2017.04.2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3블록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지상48층, 3개동 3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아파트 525대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164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18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6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0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기	세대별 계약면적(m ²)						세대별 대지지분 (m ²)	공급세대수										해당동	최저층 우선배정세대	입주정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그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이전기관 종사자등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민영주택	2017000465-01	84.6612A	84A	84.6612	28.9244	113.5856	5.3530	49.1281	168.0667	40.1272	26	13	2	1	1	1	1	1	-	6	801	1	
	2017000465-02	84.8645B	84B	84.8645	29.0673	113.9318	5.3658	49.2461	168.5437	40.2236	52	26	6	3	3	3	3	-	1	7	801, 802	2	
	2017000465-03	84.7379C	84C	84.7379	28.1503	112.8882	5.3578	49.1726	167.4186	40.1636	45	22	5	2	2	2	2	-	1	9	803	1	
	2017000465-04	84.9421D	84D	84.9421	29.1023	114.0444	5.3708	49.2911	168.7063	40.2604	43	21	5	2	2	2	2	1	-	8	803	-	
	2017000465-05	98.4708A	98A	98.4708	33.1137	131.5845	6.2261	57.1417	194.9523	46.6726	52	26	-	3	3	-	-	1	-	19	802	2	
	2017000465-06	98.3757B	98B	98.3757	32.8118	131.1875	6.2201	57.0866	194.4942	46.6276	26	13	-	1	1	-	-	-	1	10	801	1	
	2017000465-07	98.6583C	98C	98.6583	32.9150	131.5733	6.2380	57.2505	195.0618	46.7615	45	23	-	3	3	-	-	1	1	14	803	1	
	2017000465-08	98.5142D	98D1	98.5142	33.3011	131.8153	6.2290	57.1669	195.2112	46.6932	17	12	-	1	1	-	-	-	1	8	803	-	
	2017000465-08		98D3	98.5142	33.3011	131.8153	6.2290	57.1669	195.2112	46.6932	6												
	2017000465-09	98.0550E	98D2	98.0550	33.1852	131.2402	6.1999	56.9005	194.3406	46.4756	16	8	-	1	1	-	-	1	-	5	803	-	
	2017000465-10	136.3315A	136A	136.3315	47.4838	183.8153	8.6202	79.1120	271.5475	64.6272	1	-	-	-	-	-	-	-	-	1	803	-	
2017000465-11	136.6237B	136B	136.6237	46.1216	182.7453	8.6386	79.2815	270.6654	64.7657	1	-	-	-	-	-	-	-	-	1	803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주택형 136A타입은 복층 구조입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², 세대,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별 (라인별)	공급세대	층 구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계약시	계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2017.11.27.	2018.05.25	2018.12.25	2019.07.25	2019.12.25	2020.05.25	입주지정일		
84.6612A (84A)	801동(1호라인)	26	3	1	143,494,000	149,506,000	-	293,0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87,900,000
			4	1	143,494,000	156,506,000	-	30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90,000,000
			5	1	143,494,000	160,506,000	-	304,0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91,200,000
			6~10	5	143,494,000	163,506,000	-	307,0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92,100,000
			11~20	10	143,494,000	176,506,000	-	320,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96,000,000
			21~28	8	143,494,000	183,506,000	-	327,0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98,100,000

(단위: m², 세대,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2017.11.27.		2018.05.25	2018.12.25	2019.07.25	2019.12.25	2020.05.25	입주지정일
84.8645B (84B)	801동(2호라인) 802동(2호라인)	52	3	2	141,077,000	147,923,000	-	289,0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86,700,000
			4	2	141,077,000	153,923,000	-	295,0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88,500,000
			5	2	141,077,000	157,923,000	-	299,0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89,700,000
			6~10	10	141,077,000	160,923,000	-	302,0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90,600,000
			11~20	20	141,077,000	173,923,000	-	315,0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94,500,000
			21~28	16	141,077,000	179,923,000	-	321,0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96,300,000
84.7379C (84C)	803동(3호라인)	45	3	1	142,515,000	140,485,000	-	283,0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84,900,000
			4	1	142,515,000	147,485,000	-	290,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87,000,000
			5	1	142,515,000	150,485,000	-	293,0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87,900,000
			6~10	5	142,515,000	153,485,000	-	296,0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88,800,000
			11~20	10	142,515,000	166,485,000	-	309,0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92,700,000
			21~30	10	142,515,000	172,485,000	-	315,0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94,500,000
			31~38	8	142,515,000	179,485,000	-	322,0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96,600,000
			39~47	9	142,515,000	188,485,000	-	331,0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99,300,000
84.9421D (84D)	803동(2호라인)	43	6~10	5	146,012,000	155,988,000	-	302,0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90,600,000	
			11~20	10	146,012,000	168,988,000	-	315,0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94,500,000	
			21~30	10	146,012,000	175,988,000	-	322,0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96,600,000	
			31~38	8	146,012,000	181,988,000	-	328,0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98,400,000	
			39~48	10	146,012,000	191,988,000	-	338,0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101,400,000	
98.4708A (98A)	802동(1호라인) 802동(3호라인)	52	3	2	171,445,000	162,323,000	16,232,000	350,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105,000,000
			4	2	171,445,000	169,595,000	16,960,000	358,0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107,400,000
			5	2	171,445,000	173,232,000	17,323,000	362,0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108,600,000
			6~10	10	171,445,000	176,868,000	17,687,000	366,0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109,800,000
			11~20	20	171,445,000	191,414,000	19,141,000	382,0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114,600,000
			21~28	16	171,445,000	198,686,000	19,869,000	390,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117,000,000
98.3757B (98B)	801동(3호라인)	26	3	1	174,277,000	164,294,000	16,429,000	355,0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106,500,000
			4	1	174,277,000	172,475,000	17,248,000	364,0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109,200,000
			5	1	174,277,000	176,112,000	17,611,000	368,0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110,400,000
			6~10	5	174,277,000	179,748,000	17,975,000	372,0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111,600,000
			11~20	10	174,277,000	194,294,000	19,429,000	388,0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116,400,000
			21~28	8	174,277,000	201,566,000	20,157,000	396,0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118,800,000
98.6583C (98C)	803동(4호라인)	45	3	1	176,237,000	157,966,000	15,797,000	350,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105,000,000
			4	1	176,237,000	165,239,000	16,524,000	358,0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107,400,000
			5	1	176,237,000	168,875,000	16,888,000	362,0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108,600,000
			6~10	5	176,237,000	172,512,000	17,251,000	366,0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109,800,000
			11~20	10	176,237,000	187,057,000	18,706,000	382,0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114,600,000
			21~30	10	176,237,000	194,330,000	19,433,000	390,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117,000,000
			31~38	8	176,237,000	201,603,000	20,160,000	398,0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119,400,000
			39~47	9	176,237,000	212,512,000	21,251,000	410,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123,000,000

(단위: m², 세대,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 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2017.11.27.		2018.05.25	2018.12.25	2019.07.25	2019.12.25	2020.05.25	30%
98.5142D (98D1)	803동(1호라인)	17	6	1	174,420,000	159,618,000	15,962,000	350,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105,000,000
			8,10	2	174,420,000	168,709,000	16,871,000	360,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108,000,000
			12,14,16,18,20	5	174,420,000	182,345,000	18,235,000	375,0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112,500,000
			22,24,26,28,30	5	174,420,000	189,618,000	18,962,000	383,0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114,900,000
			32,34,36,38	4	174,420,000	196,891,000	19,689,000	391,0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117,300,000
98.5142D (98D3)	803동(1호라인)	6	41, 42, 43, 44, 45, 46	6	174,420,000	210,527,000	21,053,000	406,0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121,800,000	
98.0550E (98D2)	803동(1호라인)	16	7,9	2	169,493,000	168,643,000	16,864,000	355,0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106,500,000	
			11,13,15,17,19	5	169,493,000	182,279,000	18,228,000	370,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111,000,000	
			21,23,25,27,29	5	169,493,000	189,552,000	18,955,000	378,0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113,400,000	
			31,33,35,37	4	169,493,000	195,915,000	19,592,000	385,0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136.3315A (136A)	803동(1호라인)	1	47	1	281,310,000	310,627,000	31,063,000	623,0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186,900,000		
136.6237B (136B)	803동(3호라인)	1	48	1	281,310,000	306,991,000	30,699,000	619,0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85,700,0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주택형(m ²)	84.6612A	84.8645B	84.7379C	84.9421D	98.4708A	98.3757B	98.6583C	98.5142D		98.0550E	136.3315A	136.6237B
사업승인시 주택표기	84A	84B	84C	84D	98A	98B	98C	98D1	98D3	98D2	136A	136B
건본주택등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98A	98B	98C	98D1	98D3	98D2	136A	136B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카달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시 대표타입(84A, 84B, 84C, 84D, 98A, 98B, 98C, 98D, 98E, 136A, 136B)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이형타입(98D3)타입은 금융결제원에서 동호수 배정 추첨시 무작위로 결정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해당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공통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조망권, 일조권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이며, 85m²초과 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 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분양계약시 선택이 가능한 사항임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 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할인율(공급계약서 참조)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m²/세대)

구 분		84A	84B	84C	84D	98A	98B	98C	98D	98E	합계
이전기관 종사자 등		13	26	22	21	26	13	23	12	8	164
기관추천 특별공급		2	6	5	5	-	-	-	-	-	1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50%)	1	3	2	2	3	1	3	1	1	17
	기타지역 거주자(50%)	1	3	2	2	3	1	3	1	1	17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50%)	1	3	2	2	-	-	-	-	-	8
	기타지역 거주자(50%)	1	3	2	2	-	-	-	-	-	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50%)	1	-	-	1	1	-	1	-	1	5
	기타지역 거주자(50%)	-	1	1	-	-	1	1	1	-	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 1회 제한 및 예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36조제1호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나. 사업주체가 제35조에서 제46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함)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다. 사업주체가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과거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제1호의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64 1331 2145 1490">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 지역에 설치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종사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인정한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확정된 날(이전계획 고시일 또는 부지 계약일을 말함) 또는 설치된 날(업무개시일 또는 법인등기일을 말함)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함 ※ 청약주택의 입주일(2020년 11월 예정) 이전에 퇴직 예정되어 있거나, 임기제 공무원 등 계약직 종사자로서 입주일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 등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단, 청약주택의 입주일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나 계약 연장 가능성이 있는 계약직 종사자는 대상기관장의 판단하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가 세종특별자치시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일반공급 등의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자가 청약하여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계약할 수 없으며, 지정계약기간에 계약을 못했을 지라도 특별공급 1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특별공급을 받으실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방법(인터넷 신청만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주택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하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특별공급(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접속(www.housing.or.kr) → 메인화면의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 (http://apt.housing.or.kr)" 바로가기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청약신청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서약서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청약신청완료 신청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시간은 09:00~17:3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이 있을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추천기관 <table border="1" data-bbox="235 1050 1171 1398"> <thead> <tr> <th>구분</th> <th>관련법규</th> <th>해당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철거주택 소유자</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1호 철거주택소유자</td> <td>LH세종사업본부</td> </tr> <tr> <td>국가 유공자</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 3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td> <td>충남동부 보훈지청</td> </tr> <tr> <td>장애인</td> <td>「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td> <td>세종시청, 대전시청 충남도청, 충북도청</td> </tr> <tr> <td>중소기업 근로자</td> <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 <td>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td> </tr> <tr> <td>군인</td> <td>「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 <td>국방부 국군복지단</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철거주택 소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1호 철거주택소유자	LH세종사업본부	국가 유공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 3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충남동부 보훈지청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세종시청, 대전시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	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 주택의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이 일반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고 일반공급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철거주택 소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1호 철거주택소유자	LH세종사업본부																		
국가 유공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 3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충남동부 보훈지청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세종시청, 대전시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																		
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구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6.04.20.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성년 자녀수(태아 및 입양아 포함)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②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6.04.20.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단,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②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수를 산정할 때 이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

구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인 자 ※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 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②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세대주 ③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신청 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6.04.20.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입주선정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 선정하며,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 특별공급의 추천순서는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순으로 추천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해당 사항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1) 미성년 자녀수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2) 영유아 자녀수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3)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4) 무주택기간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5) 해당 시·도 거주 기간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6)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주택소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해당점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구 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고시)		
	3인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4,884,448원 이하	5,630,275원 이하	5,630,27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861,338원 이하	6,756,330원 이하	6,756,330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630,275원) + {1인당 평균소득(372,914원) * N-5}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자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당첨자 동·호수 결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고 일반공급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로 봄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만 19세 미만인자 중 세대주 포함)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청약 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 (2016.04.20.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로 봄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공급 주택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모두를 무효처리 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청약통장으로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1년 이상 거주자) 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또한 1순위 세종특별자치시(1년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세종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 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 순위에게 공급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합니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약 / 재당첨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종사자특별공급에 따른 주택 등)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p>있는 세대원 포함)는 기본양주택 당첨여부 및 재당첨 제한기간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 가능)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충족한 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시 당해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p>※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2017.04.03.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p>
--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 관련 예금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공통 /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 이하 : 가점제 적용(40%), 추첨제(60%)적용 / 85㎡ 초과 : 추첨제(100%)적용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인 자 -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전국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자는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 가점제(40%) / 추첨제(60%)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자동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추첨제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대상자 / 추첨제 적용(100%) •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이전기관중사자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포함)은 아래의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2순위 청약 불가 	
	재당첨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85㎡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85㎡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간 당첨제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85㎡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85㎡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간 당첨제한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6.08.12)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 이하 동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 주택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p> <p>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p> <p>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 최초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비 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3항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이상 ~ 2년미만	4	9년이상 ~ 10년미만	20	
		2년이상 ~ 3년미만	6	10년이상 ~ 11년미만	22	
		3년이상 ~ 4년미만	8	11년이상 ~ 12년미만	24	
		4년이상 ~ 5년미만	10	12년이상 ~ 13년미만	26	
		5년이상 ~ 6년미만	12	13년이상 ~ 14년미만	28	
		6년이상 ~ 7년미만	14	14년이상 ~ 15년미만	30	
		7년이상 ~ 8년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총점	84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건본주택에서 관계자 입회하에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전산추첨, 기타 특별공급은 공개추첨 후 당첨자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는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금회 공급주택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7.04.20.) 세대 내에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자녀를 세명 이상 둔 자가 있는 경우에 최하층을 우선 배정 받을 수 있으나 최하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차상층을 말함)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 자녀를 세명 이상 둔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 만65세 이상인 자 혹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에게 우선 배정함</p>
일반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따라 각 순위별로 다음과 같이 당첨자를 선정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선정 - 입주자선정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금회 공급주택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7.04.20.) 세대 내에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자녀를 세명 이상 둔 자가 있는 경우에 최하층을 우선 배정 받을 수 있으나 최하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차상층을 말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 자녀를 세명 이상 둔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 만65세 이상인 자 혹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에게 우선배정 배정함.</p>
예비 입주 자에 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추첨의 방법에 따라 예비당첨자를 선정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 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 •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아파트투유(www.aprt2you.com)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등		2017.04.25.(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	• 한국주택협회(www.housing.or.kr)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등)		2017.04.26.(수), 10:00~14: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14:00까지 견본주택내 입장한 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신청 관련 서류 미비 자 접수 불가	•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견본주택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일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당해지역	2017.04.25.(화), 10:00~14:00		
		기타지역	2017.04.26.(수), 10:00~14:00		
일반공급	1순위		2017.04.27.(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2you.com)
	2순위		2017.04.28.(금), 08:00~17:30		

※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동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다자녀 특별 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때(접수 장소에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 부부 특별 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접수 장소에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비사업자의 경우(접수 장소에 비치)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접수 장소에 비치)	* 접수장소

■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대상자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특화서비스 「주택신청」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 참가은행: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중앙회,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배우자 포함)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배우자, 본인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관계확인서류 추가구비(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3자 대리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처에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04.26.(수), 14:00 • 확인방법 :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www.housing.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7.05.10.(수) • 확인방법: 금융결제원 인터넷 주택청약 홈페이지 (www.ap2you.com)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개별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05.16.(화)~2017.05.18.(목)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04.26.(수), 14:00 ※ 특별공급 신청자 과다시 당첨자 발표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05.10.(수)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2순위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서비스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기간		2017.05.10 ~ 2017.05.19 (당첨자 발표 일로부터 10일간)	
인 터 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전자금융 공동망 1369 (서비스코드 : 5#)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7.05.10.(수) 당첨자 발표일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화(ARS)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VI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7.05.16(화) ~ 2017.05.18.(목) 3일간, 10:00 ~ 16:00	건본주택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계약 시 구 비 사 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공통	○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서명)
		○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 주민등록초본(1년 이상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로 신청 시)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이전기관	○	- 특별공급대상 확인서_이전기관 발급(동호수 발표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기관의 관인날인된 서류에 한함
	최하층 우선배정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구성원은 상기 공통 서류중 신분확인서류로 같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및 인감도장,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0.) 이후 발행분(특별공급 확인서는 동.호수 발표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을 제출하시기 바람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른 예외 사항은 제외)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되면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함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단지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름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KEB하나은행	아파트 분양대금	201-910014-56904	한국자산신탁(주)

※ 상기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옵션대금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중도금 대출이자 당사 대납)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현금납부에 대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당사(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최초일 전일) 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당사가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중도금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중도금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며 제1금융권 지정이 불가할경우 제2금융권으로 지정할수도 있으니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중도금대출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후 심사가 완료되어 문제가 없는 경우에 무이자로 적용되며, 개인이 대출신청하지 않거나 신용 및 금융기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실행이 불가한 자는 개인이 중도금납입일에 맞춰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입금하여야하며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함

■ 입주예정일 : 2020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VII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발코니 확장면적(m ²)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19.07.25	입주지정일
84A	31.7880	17,900,000	1,790,000	3,580,000	12,530,000
84B	20.4235	14,800,000	1,480,000	2,960,000	10,360,000
84C	24.1471	14,900,000	1,490,000	2,980,000	10,430,000
84D	20.5310	13,580,000	1,358,000	2,716,000	9,506,000
98A	35.2255	17,930,000	1,793,000	3,586,000	12,551,000
98B	25.2380	16,420,000	1,642,000	3,284,000	11,494,000
98C	25.3655	16,490,000	1,649,000	3,298,000	11,543,000
98D1	35.0330	18,290,000	1,829,000	3,658,000	12,803,000
98D2	35.0330	18,290,000	1,829,000	3,658,000	12,803,000
98D3	35.0330	19,360,000	1,936,000	3,872,000	13,552,000
136A	47.2780	21,150,000	2,115,000	4,230,000	14,805,000
136B	34.5046	20,280,000	2,028,000	4,056,000	14,196,000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KEB하나은행	발코니 확장비	201-910014-59804	한국자산신탁(주)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공사비 계좌로 분양대금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드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샷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발코니 미확장 선택시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유상 옵션

- 시스템 에어컨 및 유상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유상옵션 상세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및 유상옵션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유상 옵션의 경우 세대 타입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유상 옵션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고,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타입)	선택		에어컨 설치 적용실 (실내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LG전자)
					계약시	19.07.25	입주지정일	
84A	선택1	3	거실+주방+침실1	5,819,000	1,000,000	1,000,000	3,819,000	
	선택2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063,000	1,000,000	1,000,000	6,063,000	
84B	선택1	3	거실+주방+침실1	6,017,000	1,000,000	1,000,000	4,017,000	
	선택2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184,000	1,000,000	1,000,000	6,184,000	
84C	선택1	3	거실+주방+침실1	5,610,000	1,000,000	1,000,000	3,610,000	
	선택2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953,000	1,000,000	1,000,000	5,953,000	
84D	선택1	3	거실+주방+침실1	6,017,000	1,000,000	1,000,000	4,017,000	
	선택2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184,000	1,000,000	1,000,000	6,184,000	
98A	선택1	3	거실+주방+침실1	5,885,000	1,000,000	1,000,000	3,885,000	
	선택2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206,000	1,000,000	1,000,000	6,206,000	
98B	선택1	3	거실+주방+침실1	6,039,000	1,000,000	1,000,000	4,039,000	
	선택2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173,000	1,000,000	1,000,000	6,173,000	
98C	선택1	3	거실+주방+침실1	6,039,000	1,000,000	1,000,000	4,039,000	
	선택2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173,000	1,000,000	1,000,000	6,173,000	

98D1,2,3	선택1	3	거실+주방+침실1	5,885,000	1,000,000	1,000,000	3,885,000	
	선택2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206,000	1,000,000	1,000,000	6,206,000	
136A	선택1	3	거실+주방+침실1	5,907,000	1,500,000	1,500,000	2,907,000	
	선택2	9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침실4+멀티룸+가족실	13,574,000	1,500,000	1,500,000	10,574,000	
136B	선택1	3	거실+주방+침실1	6,776,000	1,500,000	1,500,000	3,776,000	
	선택2	7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11,924,000	1,500,000	1,500,000	8,924,000	

■ 침실1 수납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옵션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19.07.25	입주지정일	
84A	2,376,000	300,000	300,000	1,776,000	
98A	2,585,000	300,000	300,000	1,985,000	3호라인 선택불가
98D1,2,3	2,585,000	300,000	300,000	1,985,000	
136A	2,596,000	300,000	300,000	1,996,000	

■ 빌트인 김치냉장고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옵션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19.07.25	입주지정일	
84A, 84B, 84C, 84D, 98A, 98B, 98C 98D1, 98D2, 98D3, 136A, 136B	1,122,000	300,000	300,000	522,000	제조사 : 삼성 RQ22K5L/R01EC

■ 시스템 에어컨 및 유상옵션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KEB하나은행	옵션 공사비	201-910014-60804	한국자산신탁(주)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부가세 포함)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침실1과 거실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이 시공됨.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에는 기본제공품목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가 제외되며,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 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는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며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세대 및 복층형 세대 유의사항

- 각 세대 테라스는 위치 및 배치 여건에 따라 동일한 타입임에도 크기 및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람
- 카달로그 및 각종홍보물 상의 테라스(옥외공간)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하며, 해당 공간에 설치된 소품 및 식재 등은 연출용으로 실제 제공되지 않음
- 동일형의 단위세대라 하더라도 테라스(옥외)출입여부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형태가 일부 다르므로 계약 전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테라스는 본 공사시 세부 마감 및 디테일 개선에 따라 형태 및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의 유무 또는 위치에 따라 창호의 형태가 다를 수 있고 테라스가 있는 경우 내부 발코니 창호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음
- 본인이 본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했을 경우 유의사항 내용을 매수인에게 인지하도록 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제3자가 분양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테라스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하부에 다른 세대 등이 위치하므로 이용자에게 의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테라스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하부층 지붕에 의해 자연발생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유화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임의로 개조하거나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시정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하부층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인의 출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테라스가 형성되는 부위에는 우수 등의 처리를 위하여 선홍통 배관이 골조 등에 매입 시공되거나 노출되어 계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하부층 세대의 물흐름 및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테라스 및 외부공간에는 무동력한기판, 통기관 등 하부세대의 설비를 위한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냄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테라스는 공급면적에서 제외되었음

□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일괄선택 (개별선택 불가)	바닥재	마루, 현관바닥 타일, 현관 디딤판 및 굽도리,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욕실/발코니/다용도실 타일(타일 붙임 몰탈 포함), 실외기실/대피실 에폭시 도장	수공간 바닥 방수 및 배수 슬리브 바닥난방,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초배포함) 및 벽체마감 일체, 아트월, 주방 벽 타일/인조석(타일 붙임 몰탈 포함),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대피실 도장, 걸레받이	경량벽체,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천장	천장지,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대피실 도장, 천장/우물천장 몰딩 및 마감재	천정틀위 석고보드,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일반가구	현관 신발장 및 창고장(해당 타입), 드레스룸장, 화장대(상판가공석 포함), 불박이장, 복도장/선반, 수납선반 및 약세서리 일체	미설치
	주방	주방/식당 및 다용도실 가구 일체(상판, 싱크볼 및 약세서리 일체, 선반), 벽 타일/인조석, 주방 가전류(가스쿡탑, 렌지루드), 수전류, 절수페달, 음식물탈수기, 주방TV	소방관련시설, 주방배기 덕트, 설비배관(급,배수,난방), 정보통신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
	욕실	콘센트, 위생기구(양변기, 욕조, 세면대), 수전류, 액세서리류, 욕실 환풍기, 비데(부부욕실), 벽/바닥 타일, 천장재, 석재(세면대 뒷턱), 재료분리대,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하부틀, 코킹	도막방수 및 조적위 바탕처리,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배관 배선
	창호	목창호 문틀/문짝/문선/손잡이 및 경첩(하드웨어 일체)	플라스틱창호 내창,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다용도실 도어, 대피실 도어, 실외기실 도어/루버
	조명기구	매립 및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월패드
	기타	수전류(세탁수전, 발코니수전 등), 전동빨래건조대	미설치

※ 상기 품목은 주택형 별로 상이하며, 주택형별 기본제공 품목에 한하여 해당됨. 명시되지 않은 기본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 제공 품목에 준함.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84A	84B	84C	84D	98A	98B	98C	98D1	98D2	98D3	136A	136B
금 액	26,340,000	26,420,000	27,025,000	27,302,000	31,639,000	31,544,000	32,584,000	32,644,000	32,501,000	32,644,000	44,032,000	43,776,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에 따라 입주지정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절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함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VIII

기타

■ 신탁관련사항

- 본 사업은 시행자인 금강타워(주)가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금강타워(주)이고, 한국자산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함
- 공급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는 '한국자산신탁(주)'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함
-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금강타워(주) 및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 임.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한국자산신탁(주)에게 청구할 수 없음
- 개별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겸 수익자인 금강타워(주)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됨
- 신탁목적 달성,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금강타워(주)]와 수탁자[한국자산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담보책임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겸 수익자[금강타워(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공급 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위탁자겸 수익자 [금강타워(주)]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됨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제1순위 우선수익자 지급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분양대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한국자산신탁(주)는 1개월 이내에 2회의 해약 최고 및 1회의 해약통지를 통해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 특별공급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노부모 특별공급시 유주택자로 간주함)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기타 유의사항

- 행복도시 내 모든 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거동의 외벽면에 건설업체명이나 브랜드명, 심볼과 로고를 표기할 수 없고, 측벽 상단에는 마을이름과 주동번호만을 표기할 수 있음, 단, 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입구시설물에는 문자조각형태로 명기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명칭제정 자문위원회”에서 3-3생활권은 “새샘마을”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부상 주소체계에도 아파트 브랜드명이 표시되지 않음
- 도로 등 공공공간과 접한 부지 내 설치하는 보도블록, 보행등, 맨홀 등은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되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구의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소수 버림에 따른 오차(0.0190)는 136A, 136B 호실에 각각 0.0095씩 배분하였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주택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원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없으시기 바람
- 3-3생활권 H4블록과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하나의 단지가 아님을 양지하기 바람
- 당 3-3생활권의 H3블록은 적법한 색채심의를 얻어 계획되었으며 도시미관의 정비를 위해 입주자 개인 또는 연대의 취향을 토대로 색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색채변경을 시행 할 경우 행복청의 도시미관심의를 통해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함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
- 당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급이상 타사자재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마감자재리스트의 사양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모든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발코니, 인동거리에 제한을 받지않은 인접건물의 창호간의 시야간섭, 입면 장식, 지붕 태양광 집열판,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내 모형, 카다로그, 관계직원상담 등을 필히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단지는 주상복합용지에 해당하여 동별 인동거리 확보기준이 없으므로, 아파트 대비 인동거리가 가까울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크린넷, 재활용품창고, 쓰레기이송설비시스템 투입구,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환기,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단, 쓰레기 이송설비시스템 투입구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를 위하여 단지내에 쓰레기 투입구(일반용, 음식물용)가 설치(투입구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되며, 별도의 쓰레기 수거용기(일반용, 음식물용)는 비치되지 않음 단, 초기가동이 불가할 경우 쓰레기 수거용기(일반용, 음식물용)가 비치될 수 있음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주민편의시설이므로 관리비(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쓰레기 투입구 사용시기는 운영주체와 관리사무소가 협의하여 결정함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측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테일, 문주, 천창, DA, 쓰레기분리수거장(클린넷시설포함),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며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일부 동의 엘리베이터 홀은 직접 채광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당침동호수의 설계를 사전에 필히 인지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자전거보관소 일부는 지하층에 계획되어 주동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동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공사중 계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주민사전점검행사 전 샘플세대공개행사 및 개별세대 방문을 진행하지 않으며 현장방문허가 없이 무단 현장침입 등을 통한 현장 방문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시공사 및 시행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당침자 및 예비입주자 중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등본 포함)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로 필히 제출하시기 바람, 미제출로 인하여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하며 당사와 협의되지 않은 개별계약 및 분양권전매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일체 보상행위를 할 수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하였으므로 상이한 주택형별 공급금액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의 증감 시 현재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발코니 내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 할 수 있는 시설로 지상 1층까지 연결되며 비상시 사용이 용이하도록 장애물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관리소홀로 인한 비상시 재해는 계약자본인이 책임져야 함
- 하향식 피난구 개방시 경보음이 울리므로 불필요하게 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 사업승인시 해당관청에 제출한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을 진행하기전 사업주체가 예상하는 총사업비 규모를 예상하는 금액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금액은 당사가 사업승인권자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받은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당초 사업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공유면적(대지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음
- 전용면적은 동일하나 개방형발코니 설치 유무에 따라 서비스면적이 상이한 이형세대가 있으며, 동일 타입에서 동호라인 및 층수에 따라 창호의 높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건본주택 및 카다로그 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803동 저층 일부 세대는 오피스텔 동에 의한 일조, 채광,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건본주택에 비치된 도면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지붕에는 실외기실 또는 비주거시설용 냉각탑이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 및 각 동 저층부는 소음, 진동, 백연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조망, 미관,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
- 주상복합시설 내 계획된 공동주택의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입점에 따른 소음,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비주거부분의 설계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각급 학교의 개교, 전·입학 및 학급편성, 학교(교육과정 등) 운영 등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세종시 교육청 여건에 따라 변경, 조정,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입주시 학교 개교 일정에 따라 타생활권으로 통학할 수도 있음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당침자가 계약 체결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계약체결시 건본주택, 카다로그, 건본주택내 비치된 도면 등을 확인하여 평면도, 배치도,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있음
- 건본주택 내 건립타입(84A, 98B)외 미건립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건본주택 건립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건본주택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승인(변경)도면이 우선 적용되며, 가구마감자재 설치계획은 건본주택 기준을 우선 적용함]
- 건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생산업체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의 성능 이상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창호(프레임, 유리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워크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분양가 미포함)
- 견본주택에 전시된 가전의 설치위치는 표준사용규격에 준하여 설치되므로 입주자가 희망하는 특수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을 사용하실 경우 가전제품의 규격(폭, 높이, 깊이)등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하거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설치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시 이를 모두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환기구(급/배기용),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수량은 견본주택용으로 본공사와 무관하며 본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시공됨(본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냉난방기는 견본주택 전용으로 본 공사[옵션 선택]시 사양 및 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으며 일부세대의 경우 배면부 특화를 통한 입면다변화로 동일타입이라 할지라도 창호의 형태 및 크기가 변화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어 계약전 필히 확인하여야 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타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다지인, 재질 등은 생산업체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 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인테리어(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과 배치 등)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주방TV, 욕실폰, 월패드, 디지털 도어록, 무선AP,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옵션 선택에 따른 조명기구, 배선기구, 기타 통신기기의 위치, 타입,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 및 천연자재(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입체도, 단위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발코니확장형(일부 오픈발코니 또는 테라스)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비확장형 선택시 아파트 외관이 달라질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에는 오픈형 발코니로 계획된 공간은 외부창호를 설치할 수 없으며 오픈형 발코니 외벽면과 난간색상은 외부 벽면 색채 계획에 따라 시공되므로 위치별 벽체 색상이 달리 시공할 수 있음
- 본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 형태 및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방가구 및 수납가구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음.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 길이 및 위치가 차이이며,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고바라며, 마감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따름
- 타일 줄눈 위치 및 각 악세사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전 평형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욕실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부 세대 비확장 시, 하부세대의 천정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정 깊이, 등박스의 크기, 커튼박스 깊이 등의 천정부위가 변경(위치, 깊이, 형태 등)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대피실, 비확장 발코니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및 오픈발코니 바닥마감은 타일 마감임
- 각 세대의 대피실은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며, 외부창호는 안전상 화재 및 비상시에만 개폐 사용하시기 바라며, 대피실의 하향식 피난구는 개방시 경보음이 발생하며, 상부세대의 대피시 사용할 수 있도록 물건으로 적치등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외부창호는 향후 풍압 · 풍동 시험과 사용성 향상, 미관개선 등을 고려하여 유리두께 및 창호사이즈, 프레임두께, 설치위치, 개폐방향, 디자인 등 관련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내벽,외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동일 주택형 내에서도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면적이 및 확장비용이 상이하니 계약전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시공시 세대내 통신단자함 및 전원반 설치로 인하여 벽체 종류, 해당 부위의 마감 및 위치가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신발장 내부 설치시 신발장 내부 선반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음.
- 일부 타입에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다용도실과 발코니 수전 및 드레인 위치는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가 있는 세대에는 테라스에 추가적으로 오배수, 통기, 우수배관 도는 이를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 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비건립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치 및 설치 는 평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의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해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람
- 복층형 세대의 경우, 설비상의 이유로 2층 발코니는 수전 및 배수시설이 없는 건식발코니로 계획되었음.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행사(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단지모형은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발코니확장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확장형 선택시 아파트 외관이 달라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사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카다로그상에서 제시되는 확장형 선택형을 제외하고,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으며, 모든 선택형은 확장시에만 선택 가능함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의 발코니 확장여부선택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가용공간이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홍통 및 드레인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다용도실, 실외기실 등 발코니의 경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여도 비난방, 비단열 공간이며,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세대가 있는 경우 비확장 세대용 선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비확장형 선택 시 확장형 선택 시와 기본제공품목 및 공간별 선택사항이 상이하거나 제한 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고, 지하구조물 시공방법은 구조 설계에 따라 RC구조 또는 RC구조 및 PC구조가 병용될 수 있음.
- 대지면적과 용적율, 건폐율은 아래와 같음 (추후 경미한 설계 변경 및 확정측량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전체 대지면적	공동주택면적	근린생활시설 (상가면적)	업무시설 (오피스텔)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16,899.0000	14,364.0000	1,745,3756	789.6244	43.54%	309.44%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름

■ 단지외부여건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구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해당 공사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 사유가 없음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타 생활권에 대한 조성공사 및 주변단지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 .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주변 공원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하며, 건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종시 기반시설(도로) 조성계획에 따라 준공시 아파트 진출입 동선이 계획과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발코니, 입면 장식, 지붕 태양광 집열판,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와 비주거용으로 구분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설치 위치 및 형태, 경사각을 실 시공시 변경할 수 있음
- 단지둘레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북서측 및 남서측 15m 도로, 북동측 24m 도로, 남동측 45m 도로에 면하여 계획되어 주동 위치별 도로 교통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계획 및 최종측량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단, 경사로 등이 추가될 수 있음
- 단지 내 브랜드 로고의 위치, 크기 및 동 표시 등은 지역 가이드라인과 광고물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각종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입면디자인,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크린넷 설비는 세종시 전체 관로설비 공사일정에 따라 사용시점이 당 현장의 준공시점과 상이할 수 있음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주민편의시설이므로 관리비(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쓰레기 투입구 사용 시기는 운영주체와 관리사무소가 협의하여 결정함

■ 단지내부여건

- 쓰레기분리수거대/크린넷, 자전거보관소, DA의 위치 및 설치규모, 형태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 변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계획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및 인허가청의 협의결과에 따라 계획 레벨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단지내 일부 레벨차 발생은 상가 저층부 레벨차에 따른 일부 조정 가능함)
- 아파트 및 상가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음
- 입주 후 불법구조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단지 인근 도로변에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에 인접한 일부 동에는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근린생활시설 입점 용도에 따라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비주거용으로 설치되는 냉각탑에 의한 소음, 진동, 백연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냉각탑의 형태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한계선 외부에 각종 시설물 설치시 법에 저촉되어 철거될 수 있음
- 일부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비주거시설의 조명 등에 의하여 눈부심,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차주차(확인), 전기차주차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주차장은 입주주민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으며 주차료 수익금은 주민공동비용으로 충당될 수 있음
- 필로티 상부층 및 인접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저층세대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지붕과 접하며, 근린생활시설 지붕에 계획된 산책로 등에 의해, 방범에 취약할 수 있고, 옥상 구조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 (엘리베이터 오버헤드 및 냉각탑, 태양광 패널 등)에 의해 조망권, 사생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함
- 입면 특화 계획에 따라 저층부 석재나 중층 및 고층부의 알루미늄 판넬 및 유리판넬 시공 부위는 동별 위치에 따라 계획된 사항으로 세대 타입과는 무관하므로 계약 전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해당 세대는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조정을 요구할 수 없음
- 주상복합용지에 해당하여 공동주택보다 인동거리 확보가 미비할 수 있으며, 인접 동 및 세대간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동호수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각 동별 출입구의 개소와 디자인 및 동선은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며, 심의결과 및 협의내용에 따라 종류, 규모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설치되며 이로 인한 기능변경 등은 입주완료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변경 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확인)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해야하며, 집기 및 비품은 일부만 제공되고 사업계획승인서 등에 명기된 집기류등의 표기는 집기배치 적정성 검토등을 위해 명기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위치에 따라 소음, 진동,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함
- 부대시설 상부에 실외기 및 환기구 등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변동될 수 있으며, 이 시설에 따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의 발생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문주 및 주차장 램프 출입구는 추후 형태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DA의 형태와 위치는 실 시공시 변경 가능함
- 크린넷시설의 설치위치는 실 시공시 LH협의를 따라 일부 위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비주거(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전용 크린넷 시설이 단지 내부에 위치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위치 확인 바람, 이로 인한 불편사항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이로인한 환경권 침해를 발생할 수 있음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분리수거 및 크린넷 위치가 단지내 1층에 설치되어있어 비주거시설 입주자의 이용에 따른 일부 간섭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통제 및 차단할 수 없음
- 무선통신 중계기는 실 시공시 협의 기관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모형과 위치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계도면에 반영된 공용설비로 인한 모든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단지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냄새,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소방내진법규에 따라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 될 수 있음
- Hi-IoT 및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SK텔레콤에서 2년간 무상 제공되며, 이 후에는 유상으로 변경 되오니, 계약 시 인지하시기 바람.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 SKT와 제휴된 IoT 가전제품에 한함)
- 한전 인입 장비 및 통신인입 맨홀이 단지 내 경계에 설치 예정이나,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동선 간섭 및 미관저하 등 발생 할 수 있음.
- 옥탑층에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항공기 유도등 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 또는 동파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되오니, 인지하시기 바람.
-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 될 수 있음.
- 단지 내 801동 하부에는 아파트용 기계/전기실 및 우수저수조, 지하저수조, 펌프실 등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소음과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근접한 세대는 승강기 소음이 일부 발생 할 수 있으니, 미리 인지하시고 확인 바람.
- 옥외 놀이터 및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으로 인한 (인접세대) 소음 및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음(어린이놀이터 1개소는 근린생활시설 지붕에 설치됨)
- 단지 내 조경 식재 구간 중 동의 일부구간은 소방법상 비상 시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위해 식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는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옥상조경 일부 구간에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저층세대 사생활권(소음, 보안,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옥상녹화의 면적, 위치, 출입여부 등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건축, 기계, 전기 등)은 옥상 녹화와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당 사업부지 내에는 입주자 및 외부 주민이 사용 가능한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통제 또는 통제를 위한 구조물 설치를 할 수 없으며,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단지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라 설치 불가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IX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람,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디자인

1.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시 동급의 제품으로 시공됨
3.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타일, 인조석 등 공장 생산되는 모든 마감재는 시공 방식, 조색과정에 따라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5. 본 공사시 발코니에 가스배관,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확인)
6.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 벽체이며 철거시 바닥마감이 연결되지 않음
7.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9.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10.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욕실 등에 설치될 수 있음
11. 본 공사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12.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강마루로 시공방식 및 조색과정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13.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②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④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14.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15.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16. 본공사시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17. 본공사시 천장들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8. 본공사시 주방가구, 신발장 및 불박이장 등 가구의 배면 및 천장면은 도배지가 시공되지 않음

19. 분공사시 주방가구, 신발장 및 붙박이장 등 가구의 하부면은 마루판, 타일, 석재등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음
20.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 및 덕트배관이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상부에 천장 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21.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조정될 수 있음
22.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23.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가구는 견본주택 기준을 따르되 그 외 사항은 사업승인도면을 우선하여 적용함).
24.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25. 각 세대 도어에는 프라이버시 타입의 도어락이 설치되며, 도어 하부는 오토실이 설치되지 않음
26. 단위세대는 동일 타입의 경우에도 동 라인에 따라 창호 크기(높이) 및 형태가 상이하므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27. 단위세대 일부 벽체는 골조 벽체가 아닌 건식 고정으로 벽체로서 선택형 적용 되지 않음
28. 세대내 일부 실간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일반 벽식구조 아파트와 비교하여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29. 98D1·98D3타입은 동일평면이나 입면특화계획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에 창호 설치유무에 따른 타입구분으로 별도의 선택이 되지 않음
30. 98D2타입은 98D1·98D3타입과 내부구조는 동일하나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지 않음
31. 평형, 타입, 세대 위치(호실)에 따라 유상 및 무상 옵션 선택 가능 품목이 상이 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함
32.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세대/규격

1.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 및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인쇄 과정 상 오타, 오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설계도서, 마감재리스트 등을 필히 열람하여야 함
2. 세대는 도서를 기준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실측을 통하여 시공되었으나 시공오차 및 허용오차 범위내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야 함

■ 제공/전시품목

1.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외부창호는 분공사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임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모델하우스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세대 실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예정임

■ 환경권

1.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2. 전체 동의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3.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주거용 및 비주거용)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전체 동의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4. 주거용 지하주차장과 비주거용 지하주차장은 주차장 출입구 및 주차장이 구조적으로 구획되어 있어 비주거 입주자는 주거시설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으며,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환경디자인

1. 단지 외관의 색채디자인 및 마감계획은 행정관청의 디자인 심의를 얻은 사항으로 심의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되며 입주민의 개인적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2.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실시설계 검토등에 따라 현 수준의 동등성능 또는 이상으로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3.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 및 투시도, 조감도, 부분투시도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또는 실제 시공시 (설계변경 등을 통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5.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토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주변환경

1.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3. 행정중심복합도시 학교 건립 주체는 세종시 교육청이며,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4. 학교 개교시기는 해당 교육관청의 예산사정,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5. 단지 인근 각급 학교의 개교, 전·입학 및 학급편성, 학교(교육과정 등) 운영 등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세종시 교육청 여건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으며 입주시 학교 개교 일정에 따라 타 생활권 학교로 통학 할 수도 있음

■ 커뮤니티 시설

1.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집기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으므로 제품품목은 상담사 및 관련도서를 열람하여 확인하여야 함
2.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되어 질 수 있음
3.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음
4.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5.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며 그에 부수되는 제품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고지사항

1.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의 성능이상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주민공동시설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등은 표현되지 않음
3.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4.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5. 견본주택에 설치된 콘센트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임
7.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8.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9.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10.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11.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2.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13.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세미나라운지),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3개 타석)
- ※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기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개시 전에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토록 할 예정임
- 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7조(하자보수 등),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됨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KS F2292기준에 따른 기밀성 1등급 창호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전동기 등을 고효율 장비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 자동 차단콘센트 및 대기전력 차단스위치를 1개 이상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고효율 조명기기 또는 동등 이상 제품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적용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실 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기기	적용	관련 법에 따른 절수형 기기 설치
신재생에너지	적용	우수저류시설, 태양광설비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2018. 6. 13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3블럭 (새생개울 8단지)	인증번호	KRI-17-676
건축주	한국자산신탁㈜	인증기관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준공(예정)일	2020년 9월	유효기간	2017. 03. 27 ~
주소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3블럭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짜까지	
층 수	지상48층	인증 등급	
연면적	52,290.56㎡	인증등급	일반(그린4등급)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설계자	에이엔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 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7년 03월 27일

KRIEA **한국환경건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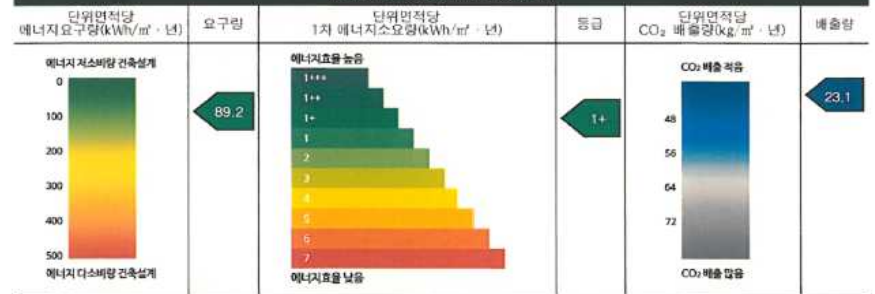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3BL(주상복합신축공사(주거))	인증번호	17-주-에-14-0010
준공연도	2020년 09월 30일	평가자	바한결
주소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3BL	인증기관	한국감정원
층 수	지하2층 / 지상48층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60035.9833(㎡)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인증 등급	
설계자	(주)에이엔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6.8	60.6	46.8	10.3
급탕	30.7	39.5	29.6	6.6
조명	11.7	10.1	27.6	4.7
환기		3.2	8.8	1.5
합계	89.2	113.4	112.8	23.1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체제,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 [√] 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만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감정원장



2017년 03월 21일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구 분	등급	AA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기준	설치항목(1)	설치항목(2)																																				
항 목	1	배선 : 세대 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 간 Cat 5e 4페어 이상	침입 감지기 (동체감지기)_세대 별 1개소	<table border="1"> <tr> <td colspan="2">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td> <td>인증번호 제 2017-303-009 호</td> </tr> <tr> <td colspan="3">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예비인증합니다.</td> </tr> <tr> <td colspan="3">※ 이 인증서는 2016년 02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합니다.</td> </tr> <tr> <td>신청인</td> <td>이름</td> <td>금강타워(주)</td> </tr> <tr> <td></td> <td>주소</td> <td>경기도 화성시 태안로47번길 47-7, (만송동, 선례타운)</td> </tr> <tr> <td>건축물</td> <td>이름</td> <td>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3블록 주상복합(아파트)</td> </tr> <tr> <td></td> <td>주소</td> <td>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3블록(세정마을 8단지)</td> </tr> <tr> <td rowspan="2">인증내용</td> <td>구분</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td> </tr> <tr> <td>초고속정보통신건물</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td> </tr> <tr> <td></td> <td>홈네트워크건물</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input type="checkbox"/> 준A</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right;">2017년 04월 06일</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right;">대전전파관리소장 </td> </tr> </table>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인증번호 제 2017-303-009 호	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예비인증합니다.			※ 이 인증서는 2016년 02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합니다.			신청인	이름	금강타워(주)		주소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47번길 47-7, (만송동, 선례타운)	건축물	이름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3블록 주상복합(아파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3블록(세정마을 8단지)	인증내용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홈네트워크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input type="checkbox"/> 준A	2017년 04월 0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인증번호 제 2017-303-009 호																																				
	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예비인증합니다.																																						
	※ 이 인증서는 2016년 02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합니다.																																						
	신청인	이름	금강타워(주)																																				
		주소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47번길 47-7, (만송동, 선례타운)																																				
	건축물	이름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3블록 주상복합(아파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3블록(세정마을 8단지)																																				
	인증내용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홈네트워크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input type="checkbox"/> 준A																																				
	2017년 04월 0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	통신 배관 실(TPS) 설치	차량 통제기 (단지입구)																																					
3	집중 구내 통신실 (MDF) 설치	전자경비 시스템 _경비실 내																																					
4	단지 내 폐쇄회로 TV장비 (CCTV) 설치	무인택배 시스템 _ 칸수 : 세대수 15% 이상																																					
5	가스밸브 제어기 (가스밸브 차단기)	욕실폰																																					
6	거실 침실 조명 스위치	주방TV																																					
7	난방 제어기 (온도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8	현관 방범 감지기	디지털 도어락																																					
9	주동 현관 제어기 (자동문, 인터폰)	엘리베이터 호출 연동																																					
10	원격검침 전송장치	현관 도어카메라																																					
11		대기전력 차단 장치																																					
12																																							
13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원 / VAT포함)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원)	비 고
건축	(주)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817,475,000	부가가치세 포함
전기	(주)서광이에스	559,667,073	
정보통신, 소방	(주)나라기술단	151,8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항 목	공 증	금 액 (원)	비 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21,976,920,000	
	기간이자	1,091,151,230	
	그 밖의 비용	1,210,675,860	
계		24,278,747,090	
공사비	토목	827,981,555	
	건축	48,185,050,746	
	기계설비	7,303,169,691	
	그 밖의 공종	12,571,396,818	
	그 밖의 공사비	9,103,425,282	
계		77,991,024,092	
간접비	설계비	2,017,606,279	
	감리비	2,528,942,073	
	부대비	1,697,847,201	
계		6,244,395,553	
그 밖의 비용		7,241,833,265	
합계		115,756,000,000	

▣ 분양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81,029,200,000	제 01282017-101-00044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중 보증사고·보증기간·계속사업·계속사업의 정의,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 보증사고의 정의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함
 -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함
 -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보증기간의 정의 : "보증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 ◎ 계속사업의 정의 : "계속사업"이라 함은 제4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또는 공동사업주체가 공사를 완료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보증사고일의 정의 : "보증사고일"이라 함은 보증회사가 제1조 제4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목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가. 제1조 제4호 가목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나. 제1조 제4호 나목에서 라목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시기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함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함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함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웁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7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시행사 및 위탁사,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시행사	상 호	한국자산신탁(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등록번호	107-81-97673
위탁사	상 호	금강타워(주)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47-7, 306호(반송동, 서해더블루)
	등록번호	306-88-00226
시공사	상 호	현대엔지니어링(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등록번호	101-81-66755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hillstate-hec.co.kr/sejong>

■ 견본주택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 분양문의 1811-0880

-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